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7,415,275	9,822,458
일반회계	287,103,918	8,613,118
특별회계	40,311,357	1,209,341
기타특별회계	40,311,357	1,209,3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24,610	111,738
수질개선특별회계	19,819,091	594,573
농촌주택특별회계	15,209	4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65,387	16,962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444,199	103,326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81,378	8,44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725,363	111,761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027,255	120,8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1,211	21,03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888,073	116,64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19,581	3,587

제 2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4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73,36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 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